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임태현 소유물건 (2025타경1117)
의 회 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평 가 서 번 호	대화 16-2505-2-004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재출차기 안보청)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3층
대표전화 : 052-710-5530 FAX : 052-710-5540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의선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문의선

김성훈



감정평가액	일억일천사백만원정 (₩114,000,00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평가목적 (제출처)	법원경매 (제출처 : 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임태현 (2025타경1117)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 05. 22	2025. 05. 22
		작성일	2025.05.23

평가내역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평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14,000,000
가	합계					₩114,000,000.-
내		이	하	여	백	
용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조재석

조재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9-1번지 "금강아파트 201동"
주용도	공동주택
사용승인일자	1990. 5. 30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층수	지하1층 / 지상10층
건물의 규모	140세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 (m ²)	(주)공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대지권면적 (m ²)	전용률(%)	용도
가	2층 214호	53.84	19.2041	73.0441	31.24	73.71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소재 "울산광역시동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금강아파트 201동 2층 214호"에 대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이론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5월 22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5월 22일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5.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내 건축물현황도 및 현실 점유 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 나. 본건은 현장 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능하여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따른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향후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내부 관리상태, 구조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다. 본건은 집합건물로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원의 요청에 따라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의 가격배분 내역을 명세표 하단에 별도 기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 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익 및 환원율의 파악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함.

$$\text{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2.1.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울산광역시 동구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기 호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m ²)	거래일자	거래금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거래단가 (원/m ²)	
사례1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53.84	2024.01.09	120,000,000	-
				1990.05.30	2,228,826	
사례2	화정동 161-1 대송현대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59.78	2024.06.28	127,000,000	-
				1991.09.20	2,124,45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2. 유사 물건의 평가선례

울산광역시 동구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 호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 (m ²)	기준시점	목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평가단가(원/m ²)	
선례 1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53.84	2025.03.31	법원매	108,000,000	-
				1990.05.30		2,010,000	
선례 2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53.84	2024.09.01	법원매	120,000,000	-
				1990.05.30		2,230,000	

2.3. 정상가격 수준 검토

용 도	전유면적당 가격 수준	비 고
아파트	1,950,000원/m ² 내외	-

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3.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 1>을 선정하였음.

울산광역시 동구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분	소재지 지번	동·층·호	전유면적 (m ²)	거래일자	거래가액(원)	비 고
				사용승인일	거래단가(원/m ²)	
사례1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53.84	2024.01.09.	120,000,000	-
				1990.05.30	2,228,826	

3.2. 사정보정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3. 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대상물건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시점수정함.

■ 울산 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 = 118.60)

울산 동구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119.10	118.90	118.70	118.70	118.80	118.60	118.20	117.30	116.20	115.10	111.90	109.50
2023년	108.00	106.90	105.50	104.10	102.60	101.90	101.60	101.60	101.70	101.90	101.90	101.90
2024년	101.80	101.70	101.50	101.40	101.30	101.20	101.00	101.00	100.90	100.80	100.70	100.60
2025년	100.50	100.40	100.00	99.70	-	-	-	-	-	-	-	-

"거래사례 1"의 거래시점(2024. 01) 적용 지수	101.9
대상물건의 기준시점(2025. 05) 적용 지수	99.7

거래시점 : 2024.01.09, 2023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5.05.22, 2025년 04월 지수를 적용함.

■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지수	99.7/101.9=0.97841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4.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주거용)

요 인	세 항 목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사례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격차율 계
가	사례 1	1.00	1.00	0.97	1.000	0.970

기 호	구 분	개별요인 비교 내용
가	단지외부요인	대등함.
	단지내부요인	대등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기타요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4.1. 단가 결정

$$\text{산식} =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제요인 비교}$$

기 호	구 분	사례단가 (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비 고
가	제2층 제214호	2,228,826	1.000	0.97841	0.970	2,115,284	2,115,284	-

4.2. 시산가액 결정

$$\text{산식} = \text{면적} \times \text{단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m ²)	단가(원/m ²)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 고
가	제2층 제214호	53.84	2,115,284	113,886,891	114,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액 결정

5.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가	114,000,000	-

5.2. 시산가액 결정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선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3. 감정평가액 결정

$$\text{산식} = \text{면적} \times \text{단가}$$

기 호	구 분	전유면적(m ²)	단가(원/m ²)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 고
가	제2층 제214호	53.84	2,115,284	113,886,891	114,000,000	-
합 계					114,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1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9-1 금강 아파트 201동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각층동일
				1층	947.56			
				2층~10층	940.84			
				지하실	661.99			
				부속건물 노인정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37.8		
기계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150.35					
경비실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9.72					
	동 소	149-1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8,819.8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가				(내) 철근 콘크리트조 2층 214호	53.84	53.84	114,000,000	비준가액
				1.소유권대지권	3,124	3,124		
					-----	-----		
					881,980	881,980		
	합 계						배분내역 토지 : 45,600,000 건물 : 68,400,000 ₩114,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소재 "울산광역시동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 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1) 건물의 구조

기호(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스투브지붕 지하1층 지상10층건 내, 2층 제214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05.3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 (가)는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냉난방설비등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본건 및 주변 가로망상태 보통임.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2)(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2)(대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2)(방어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임대관계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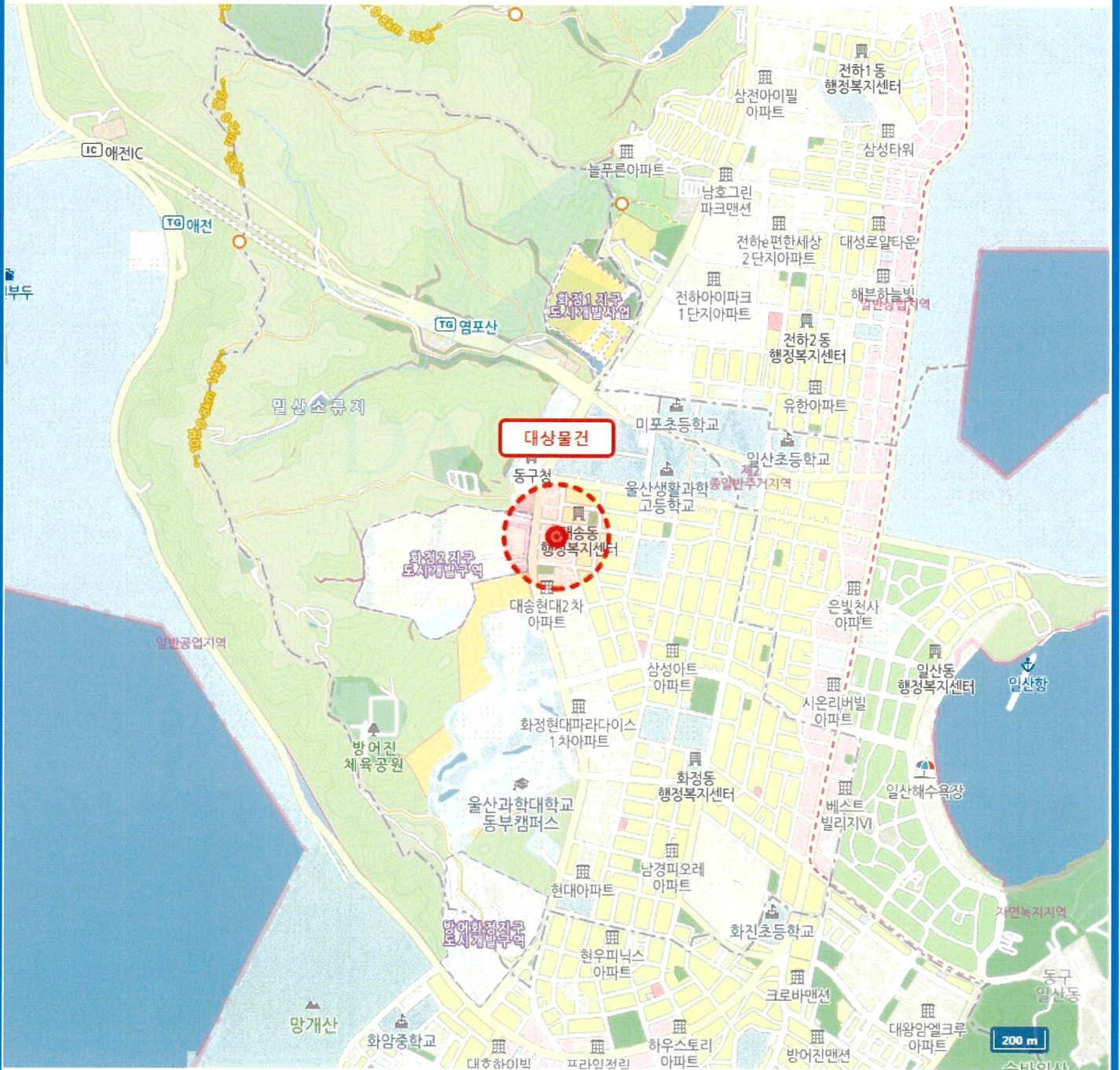
없 음.

광역 위치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201동 2층 214호



상세 위치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49-1 금강아파트 201동 2층 214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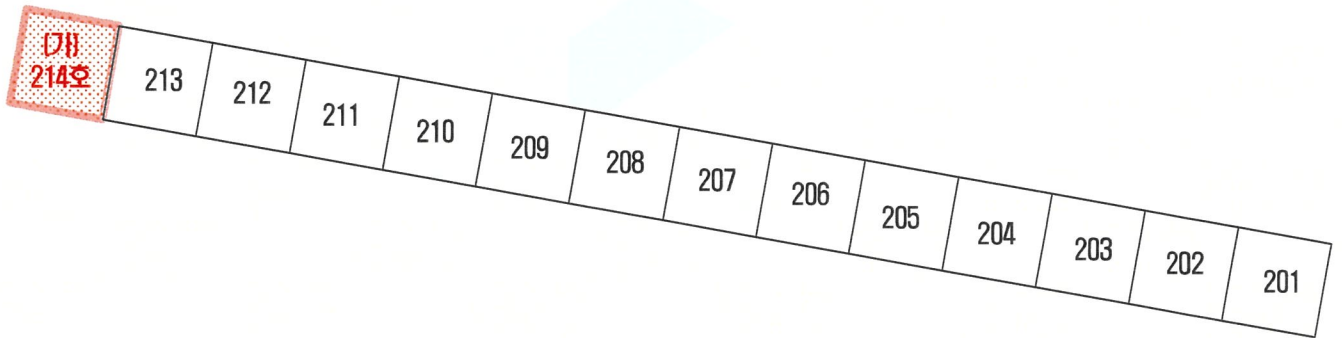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상황

S = No Scale



금강아파트 201동 2층 214호 호별배치도 등



【 호별배치도 및 내부배치도 】

현 황 사 진



【 본건전경 - 서측에서 촬영 】



【 주위환경 - 서측에서 촬영 】

현 황 사 진



【 본건현관 】

(주) 대화 감정평가법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 3층

TEL.052-710-5530 FAX.052-710-5540

문서번호 : 대화 16-2505-2-0043호

시행일자 : 2025-05-26

수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참조 : 경매10계

제목 : 감정평가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1. 저희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05-12자 귀 제 『2025타경1117』 호로 의뢰하신 『임태현 소유물건(2025타경1117)』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첨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김성훈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대화 16-2505-2-0043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 귀하

— 金사십오만일천원整 (₩451,000.-) —

2025-05-12 일자 귀 제 『2025타경1117』 호로 의뢰하신 『임태현
소유물건(2025타경1117)』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관한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290,000	● 평가수수료 ●
실비	여비	(114,000,000x(11/10,000)+195,000) * 0.8 ≒290,000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특별용역비	
소계	₩120,600	
합계	₩410,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	₩41,000.-	
총계	₩451,0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451,0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520043)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100-036-821350 (예금주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사업자번호 : 684-85-02405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지사장 김성훈



(TEL. : 052-710-5530 FAX. : 052-710-5540)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번호	
		1	0				

사건번호	진행번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세금공제후 지급액
		원금	부가가치세	계	소득세	주민세	
2025타경1117		₩410,000	₩41,000	₩451,000			₩451,000

출급금종류	감정료						
출급청구일	2025. 05. 26						

청구자	성명	김성훈	전화	052-710-5530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84-85-02405	우편번호	44774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13,3층		

대리인	성명		전화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출급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이자지급
	<input type="checkbox"/>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input type="checkbox"/> 이자만 지급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 100-036-821350 (예금주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
--------	--

위의 보관금의 출급을 명함.
2025년 05월 26일

울산지방법원 경매10계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상)준